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632호 2021. 11. 08.(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04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06호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1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 5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5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1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60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63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3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고시) ----- 11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4호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5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1-69호선)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15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73호선)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 17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58호 등록 공인 공고 ----- 181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9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18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를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구민권익위원회”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04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의 30퍼센트를,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및 다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0조의2(관람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공연을 관람하려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4

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3조(「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4조(「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을 “등록장애인, 노인 및 다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으로, 단서 중 “50 범위 안에서”를 “50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문화활동”을 “가족 친화 활동”으로 한다.

5. 직원의 불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 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7.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과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06호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재직기간 25
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
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규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 주체 간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

지도록 한다.

2. 민관협치의 모든 참여 주체는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 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위원회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동장이 추천하는 구민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④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8조(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민관협치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민관협치 관련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협치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구민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제안 등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외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단, 기

존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⑩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⑤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의 자치회장직 직무대행자 선정 세부 방법은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국 또는 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간사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실무를 총괄하며 근무방식에 따라 공개 채용으로 선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주민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에 한정하여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치계획안에 대한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을 제공하거나 경품 제공 등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자치계획안의 수립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안은 제1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회의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15조(자치계획의 내용 등) ① 자치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

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6조(주민자치회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학사업) 주민자치회 및 제35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는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 장학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종료 후에는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3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동 행정복지센

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장애인의 여가·문화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 형편 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설치·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9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제4조에 따른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제29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박람회 및 지역 체육대회 참가 지원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별 음악회 및 축제 등 개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 하여야 한다.

제27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

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감면대상 등의 결정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0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동장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해 반

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 운영

제37조(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서구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을 둘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8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9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임기 만료일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12월 31

일까지로 연장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의결 및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 상한선(제29조 관련)

구분		기 준	사용료 등 (범위 내)	비 고
과목				
각종 시설 (사용료)	다목적 홀, 회의실 등 (부대시설 포함)	2시간	30,000원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당 10,000원 추가 산정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체력단련실 (헬스장)	1개월	20,000원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취미, 교양, 생활체육 등 강좌	1개월	30,000원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액(제29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각종 시설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프로그램(강좌) 운영에 따른 이용 - 관내 직능단체 등의 회의 - 조례 제24조의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에서 주최(주관)하거나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강좌 - 순수 예술 분야의 창작활동·공연 	50%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	서구 주민에 한정하며, 1인당 제한 강좌 수는 동별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함.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인천광역시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규격 :”을 “규격:”으로, “30mm이내”를 “30mm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수동인증기 :”를 “수동인증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민원처리기기 :”를 “민원처리기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를 “신용카드, 전자화폐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분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	무료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800원	
(5)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당	300원	
(6) 선급금 정산확인원	”	300원	
(7) <삭제>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당	600원	
2. 문화관광체육분야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수수료	”	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	1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9)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4,000원	
(3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00,000원	
(3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	"	50,000원	
(3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30,000원	
(3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20,000원	
(4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50,000원	
(4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	"	30,000원	
(4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4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4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30,000원	
(4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3. 부동산중개업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800원	
(6)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800원	
4. 농수산업분야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	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11)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1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1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1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1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1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22)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23)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24)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2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26)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7)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2,500원	
(28)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9) <삭제>			
(30)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31)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500원	
(32)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2,000원	
(33)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2,000원	
(34)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35) 어업신고 수수료	"	1,500원	
(3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500원	
(3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3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39)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	800원	
(40)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41) <삭제>			
(42)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43)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3,000원	
(44)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	3,000원	
(4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46)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7)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4,500원	
(49)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0)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1)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5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3,000원	2016.12.30. 삭제
(5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무료	
(60) 어획물 운반업 등록	"	5,500원	
(6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6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	1,000원	
(6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	500원	
(6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1,600원	
(65)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800원	
(66)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2,000원	
(67)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1,000원	
(68)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9)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70)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	9,000원	
(71)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72)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73)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74)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75)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76)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77)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78)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79)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8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82)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83)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84)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85)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500원	
(86)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87)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	800원	
(88)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89)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	3,000원	
(90)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수수료	"	3,000원	
(91)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5. 공장설립분야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6. 석유판매업분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7. 환경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5,000원	
(3) <삭제>			
8. 위생분야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9. 보건사회분야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13)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800원	
(1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당	500원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당	40,000원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	20,000원	
10. 도시계획분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1,500원)	
(2) 환지(예정지) 증명	1통당	400원	
11. 건설행정분야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12. 교통행정분야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500원	
(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	"	1,000원	
13.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200원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400원	
	20장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초과마다		
(4)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필지	6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칼러불가)	8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1,2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 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국문·영문)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국문·영문)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제적증명서	1건	무료	
- 정원외관리증명서	1건	무료	
- 졸업예정증명서	1건	무료	
- 교육비납입증명서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19) 어선원부	1건	8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문·심의·조정”을 “심의”로 한다.

제19조를 제23조로 하고, 제6장(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장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제19조(지역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계획과 광역계획에 연동하여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국가계획 등)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취약지역과 에너지이용소외계층(「에너지법」 제16조의2에 해당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주민을 말한다.)에 필요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에너지센터 설립)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1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의 추진
2.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포럼 운영(민·관·기업 포럼)
3. 지역에너지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다음 각 목의 사업 위탁 또는 직접 수행
 - 가.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 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다.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 라.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 마.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 바.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 사. 에너지 교육·홍보 지원 및 관리
 - 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 ②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 ③ 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지원센터(「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1항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에너지 복지사업

제22조(에너지 복지사업) ① 구청장은 에너지취약지역과 에너지이용소외계

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정책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태양광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지원 시 에너지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등 에너지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2.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3. 에너지 진단 및 효율 향상 지원사업
4.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5. 에너지취약지역의 전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6. 에너지취약지역의 에너지 공급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으로 한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을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요건 등

사업의 종류	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허가받은 용기충전업소가 위해방지 및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자동차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3.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충전설비는 자가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별표 4】 제1호가목 1)의 다), 라), 마)에 따른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 5.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노후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등 시설의 변경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는 전용·준공업지역에 한한다. 다만, 기존 허가받은 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별표 5】 제1호가목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적용한다. 3. 판매업소 부지는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주차면적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도로폭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이전할 수 있다. 4. 판매업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 5. 용기보관실은 「건축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저장설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신규허가 시 판매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1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전산망 (이하 “구 지정 전산망”이라 한다)을 통한 신고필증을 배출자가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 시에는 인증번호의 기재를 통해서도 신고필증의 부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홈페이지를”을 “지정 전산망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필증의 구입 시에는 수수료를 1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추진단”을 “제1항에 따른 시민추진단”으로, “구성하며, 권역별 참여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민추진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⑤ 분과별 분과위원장을 시민추진단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전반적인 실무를 처리할 총괄간사 1명을 두되, 전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원장과 간사, 총괄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시민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권역”을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분과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총괄간사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으로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3조(위원의 모집) 동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별지 제1호서식)

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단 최초 구성 시에는 동장이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운영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관리)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7조(회의소집)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적 사항 공고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제11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의 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문화교실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각 자치센터는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운영하여야 하며 상반기·하반기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 실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지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권역별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권역(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2. 제2권역(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3. 제3권역(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4. 제4권역(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5. 제5권역(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제13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14조(이용시간) ①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시설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이용주민 확대를 위해 새벽·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센터 관리를 위한 운영서식)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7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시설사용승인서, 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접수증(별지 제9호서식)
4.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별지 제10호서식)
5.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접수대장 및 수료자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6. 주민자치센터 수입결의서(별지 제12호서식)
7.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8.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환불액 결정 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
9. 주민자치센터 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

10. 주민자치센터 회계출납부(별지 제16호서식)

1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별지 제17호서식)

12.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물품 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13.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4.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

15.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별지 제21호서식)

16.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찰(별지 제22호서식)

제16조(보고 등) 동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별지 제23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 결과 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

제17조(수강생 모집) ①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동 홈페이지,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되 정원 외 접수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활용하여 예비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자치센터 수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일부 인기 강좌의 경우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수강관리 및 사용신청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

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정치적 이용 목적 또는 영리추구 목적 및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으로 같음한다.

③ 수강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일정 기간 수료 과정을 끝마친 수료자에 대해서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 자치센터의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2. 수강료는 접수 기간 중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주민자치회가 징수한다. 다만,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통장에 다음 날까지 입금 처리한다.

3. 수강료 등을 징수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센터 회계출납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

용료의 경우는 동장에게, 수강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 감면 신청자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동장은 자치센터 사용료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 및 사용신청의 취소) 수강(사용)자가 납부한 수강(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1. 프로그램 시작 전 또는 자치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수강료 전액 환불)

2. 프로그램 시작 후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

3. 자치센터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4. 시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운영경비의 집행)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3.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4. 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공공요금 포함)
5.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6.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23조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저소득층 지원, 경로 행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제외)

② 경비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센터 회계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에 따라 공개한다.
제2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 기준에 따른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의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실비수당 및 강사의 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물품) 동장은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가 사용 중인 시설과 물품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시설·장비·물품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

야 한다.

제24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서식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 상황 등을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행정)지원 자원봉사
2. 자원봉사 강사 및 강좌 운영지원 자원봉사
3. 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② 동장은 자원봉사 모집 홍보물을 게시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봉사활동 시 패용할 명찰을 지급한다.

제25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설에서 사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
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을 것
3. 이용자는 시설·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

제26조(주민참여) 동장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관내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 주민조직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강사관리 및 운영

제28조(강사의 관리 및 운영) 동장은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강생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촉 및 위촉 해제 시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강사관련 운영서식) 자치센터 강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별지 제26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27호서식)
4.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강사 Bank 운영) (별지 제28호서식)

제30조(자격요건)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제31조(강사모집) ① 강사는 추천 및 공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강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강사 만족도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수시 위촉은 새로운 강좌의 개설, 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하며, 위촉 기간은 위촉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로 하고 위촉 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32조(강사의 의무) 위촉된 강사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구청장 또는 동장이 실시하는 강사 소양 교육 참여 및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위촉 해제)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를 어려운 경우

2. 수강 참여 저조, 민원 발생,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그 밖에 불미한 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이력관리)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강사 관리 대장(강사Bank 운영)을 작성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강사의 중복위촉 제한) 구청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 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 1명이 구 관내 자치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6조(운영세칙) 주민자치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세부 운영세칙을 정하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의 사유와 정지에 관한 사항
5. 회계 운영과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 (범위 내)	비 고
강 사	시 간 당 (1회 1시간)	30,000원	○ 동일 강의 당 지급 한도액: 월 600,000원 ※ 동일 강의: 강사 및 프로그램 내용이 동일 ※ 1시간 초과 강의 시 시간당의 100% 추가 지급 예) 1시간 30,000원 / 1시간 30분 45,000원 2시간 60,000원 / 2시간 30분 75,000원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동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1. 접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 2. 접수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직원 :)
- 3. 모집인원: ○○명
- 4. 자격요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다.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해당 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7. 결과통보: 개별 통보 및 공고

8. 문의사항: ○○동 행정복지센터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동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직업	
	지원사유			
년월일	주요 경력 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			
본인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행정서비스 홍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gap: 5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div>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 시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뒷면)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구 주민자치회 위원인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되며, 관련 업무처리 용도 외에는 절대 이용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4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4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분과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됨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오

제공받는 자	인천광역시 등 행정기관,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통계수집, 정책 개선 위한 연구 기초자료,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보제공, 위원 상호간 정보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중 및 임기 종료 후 2년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주민자치위원 자격 여부

주민자치위원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모집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피추천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직 업	
	관련분야			
추천인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추천단체			
추천사유				
년 월 일		주요 경력 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		
피추천인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행정서비스 홍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피추천인 : (서명 또는 인)
 추천인(단체)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 시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뒷면)

○○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구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되며, 관련 업무처리 용도 외에는 절대 이용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등
-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요건 확인 및 운영 관리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4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4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분과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됨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오

제공받는 자	인천광역시 등 행정기관,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통계수집, 정책 개선 위한 연구 기초자료,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보제공, 위원 상호 간 정보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중 및 임기 종료 후 2년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주민자치위원 자격 여부

주민자치위원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모집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별지 제4호서식]

○○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

연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폰)	위촉 및 해촉 사항			비고
								위촉 일자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동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 현 황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장	위원	비 고
○○동 주민자치회		명 (남: 명, 여: 명)	

□ 위원별 인적사항

연번	직 위	성명	거주 동	위촉 일자	임기 만료 일자	비고
1	회 장					
2	부 회장					
3	간 사					
4	감 사					
5	위 원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또는 서구 ○○동장

[별지 제6호서식]

(표지)

주민자치회 회의록

【제 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일 시 :

장 소 :

○○동 주민자치회

년 월 ○○동 주민자치회(정기회의, 임시회의)

회 의 록

일 시	년 월 일 : ~ :	장 소	
안 건	1. 2. 3.		
<input type="checkbox"/> 발언내용			
<input type="checkbox"/> 결정사항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의록 서명 - 주민자치회장 (서명 또는 인) - 부 회 장 (서명 또는 인) - 간 사 (서명 또는 인)			
비 고	별첨 1. 회의 참석부 및 심의 의결서 2.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별지 제7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결 재	담당자	담당

- 운영일자: 20 년 월 일 요일 (: ~ :)
- 시설 및 강좌 프로그램 이용 현황

프로그램	운영내용	담당봉사자 서명
체력단련실	사용자수 명 장비점검 : 정상(), 비정상()	
마을문고	대출자수 명	
강좌명	출석인원 명(출석대상 명)	
강좌명	출석인원 명(출석대상 명)	
:	:	:

- 시설이용 현황

구분	총계	성별			시설별					
		계	남	여	계	인터넷방	체력단련실	강당	어학실	...
일계/누계	/	/	/	/	/	/	/	/	/	/

※ 시설별은 동별 시설등을 구분하여 기재

- 강좌 프로그램 이용 현황집계(월말 작성)
- 기간: 20 . . . ~ 20 . . .

강좌명	총 계		이용자현황										비 고		
			성별			참여계층별									
	누계	당일	계	남	여	계	어린이	청소년	주부	남성	노인	기타			

-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등 활동사항
- 그 밖의 사항(운영상의 특기사항, 보도자료제공, 문제점 등)

※ 운영일지는 일자별로 작성하며, 별도서식이 필요한 경우 위 서식에 준하여 변형 가능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						
사 용 자	성명(단체)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H.P)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목 적	(참석예정인원 : 명)				
	행사내용	-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 용 료	금 원					
사 용 료 납 부	전 액		일 부		전액면제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 (절 취 선)

시설사용 승인서				
사 용 자	성명(단체)		사용장소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			
사 용 료	금 원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①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서 약 서

인천광역시 서구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함에 있어, 본인(단체)은(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이의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다 음 -

1.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한다.
2. 주민자치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동장이 시설 사용 결정을 임의 취소 또는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강좌		수강료	원
※ 조례 제29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강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강기간	20 . . . ~ 20 . .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절 취 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증(수강생용)			
발급번호	(접수자 : (인))		
수강과목			
성 명		연락처	
수 강 료	금 원		
수강기간	20 . . . ~ 20 . . .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 주민자치회장(인)			

※ 뒷면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및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시책사업 홍보용으로 이용
(수강증 발급번호 구성 : 20 (년도)-1(발급월)-1(일련번호))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

매주 요일

강 사 :

(서명)

연번	1	2	3	4	5	6	7	8
성명								
주소								
전화								
학 습 일 자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접수대장 및 수료자 관리대장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프로그램명	수강기간	수강료	수강료 납부확인 (인)	수료 여부	동아리 활동유무	자원봉사 활동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문서번호	○○동 주민자치센터 호		수 입 결 의 서	
시행일자				
회 장		발 의		
간사 또는 회계책임자		징 수 부 등 재		
협 조	동 장 담 당	수입 연도	20 년도 수입	
결정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금 원(금 원) </div>			
납입인원	○○○외 명			
적 요	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

대 상 자	성 명		전화번호 (H.P)	
	주 소			
사용(수강) 기 간				
사용목적 (수강과목)				
감면사유				

위와 같이 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강좌)을 사용(수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직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취소내용	수강료 환불인 경우 해당 강좌명		
	사용신청 취소인 경우 해당 시설명		
취소사유			
환불신청액	금	원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p>「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p>			

..... (절 취 선)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			
신청인		생년월일	
환불결정액	원	결정액 산출내역	
입금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p>「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동장(주민자치회장)</p>			

[별지 제15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 동 주민자치센터 호								
간사 또는 회계책임자		회 장		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협 조		
				세 출 과 목		담 당 동 장		
발 의	. . .	인	정책	주민자치 센터 운영비	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단위		지출부기재	. . .	인	
계 약	. . .	인	세부		지급 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	. . .	인	편성목		지급 명령 번호	제 호	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금 원(금 원) </div>								
적 요								
채 주	주 소 :			계 좌 입 금				
	상 호 :			은 행 명 :				
	성 명 : 인			계좌번호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년 월 일 성 명 인 </div>							
비 고								

[별지 제16호서식]

회 계 출 납 부

[료]

연월일	적 요	출 납 액(원)			결 재		
		수입액	지출액	잔액	담당자 (간사)	담 당 (부회장)	동 장 (회장)

※ 사용료와 수강료 구분 별도 기록 / 결산은 일계, 월계, 분기계, 반기계, 연계 확정
수입액 : 징수금, 보조금, 사업소득액, 이자 등
지출액 : 센터 및 강좌 운영비, 강사수당, 시설개선비 등

[별지 제17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제 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운영개요

- 기 간 : 년 월 ~ 년 월
- 운영장소 :
-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외 개 교실
- 프로그램강사 :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전기이월액	수입	지출	잔액	비고

○ 수강료 수입내역

연번	프로그램명	수입금액	산출내역	비고
	계		수강인원×수강료	

○ 수강료 지출내역

연번	지출내역	지출금액	산출내역	비고
	계			
	강사료 등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 주민자치회

[별지 제1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물품 관리대장

관리 번호	구입 일시	품 명	규격 (형식)	모델명	용 도	구입가 (천원)	구입처		제조회사		결 재		
							상호	전화	명칭	전화	담당자	담당	동장

[별지 제1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

봉사분야		봉사기간	~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E-mail :		
전화		휴대폰	

=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주민자치회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5. 주민자치회장은 자원봉사자의 신분증명을 위해 명찰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는 직무수행 중 항상 지참, 패용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봉사분야	비고

※ 봉사분야 :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보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분류

[별지 제2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결	간사	주민자치회장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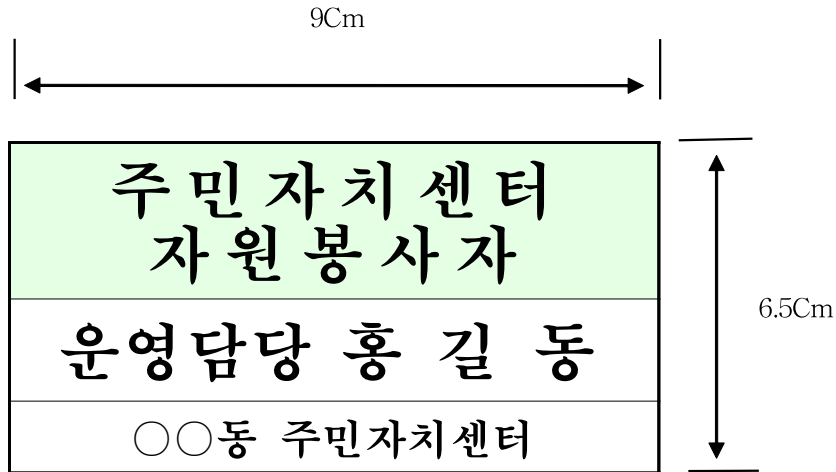
	담당자	담 당	동장
협조		전결	

근무시간	년 월 일(요일)		
근무장소	○○동 주민자치센터		
	활 동 내 용		
활동일시	년 월 일(요일), 활동시간(: ~ :)		
성명	장 소	시 간	업무내용

※ 활동일지는 일자별로 작성하며, 별도서식이 필요한 경우 위 서식에 준하여 변형 가능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찰



[별지 제2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

자치센터명		회계연도	
작성자		확인자	○○동장(인)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

항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기타사항

[별지 제2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자치센터명		회계연도	년도(월 ~ 월)
작성자		확인자	○○동장(인)

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성과
	시행 기간	소요예산	사업개요	

※ 세부 추진 내용 별첨(입출금통장 사본 포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수입		지출		잔액	비고
금액	수입내역	금액	지출내역		

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

[별지 제25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자택)	휴대전화번호			
지원분야 (강의가능분야)	지원이유			
E-mail				
자격·면허 (사본 첨부)	자격·면허명	발행처	자격·면허명	발행처
년 월 일	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합판 사진 1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강 의	일 시	강 의 내 용	비 고
제1강			
제2강			
제3강			
제4강			
제5강			
제6강			
제7강			
제8강			
제9강			
제10강			
제11강			
제12강			
제13강			
제14강			
제15강			

[별지 제27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

사 진 (반명합판)	성 명			담당강좌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주요 이력 및 경력				
자격·면허	자격·면허명	발행처	자격·면허명	발행처
기 간	주민자치센터 강의 경력 등			

[별지 제2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담당강좌	자격 면허	주요 경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83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168호(2021. 9. 27.)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사항 중 정정사항(건축물 허용용도 오기)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의 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1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요 정정 내용

-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오기 정정
 - 공공문화·복지시설(CW)에 대한 허용용도 중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에 명기된 시설의 명칭으로 정정함.
 -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변경 없음)

- 명칭: 인천도시공사 사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검단신도시 및 인천 지역 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
-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 수도권 서부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나. 사업개요 (변경 없음)

- 근거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사업비: 14,038억원
-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250,719.2	100.0	
산업시설용지	1,381,455.0	61.3	
일반공장용지	1,328,186.8	59.0	
임대공장용지	17,205.6	0.7	
지식산업센터용지	26,441.9	1.2	
재활용시설용지	9,620.7	0.4	
지원시설용지	57,033.4	2.5	
지원시설용지	52,573.4	2.3	
주유소용지	2,441.5	0.1	
공공문화·복지시설	2,018.5	0.1	
주거용지	5,693.6	0.3	22세대
공공시설용지	806,537.2	35.9	
공원·녹지	226,270.8	10.1	
공원	66,852.2	3.0	3개소
녹지	138,754.4	6.2	11개소
저류시설	20,664.2	0.9	4개소
기타시설용지	580,266.4	25.8	
폐기물처리시설	38,680.9	1.7	1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40,088.4	1.8	1개소
빗물펌프장	4,139.6	0.2	1개소
변전소	3,993.1	0.2	1개소
주차장	23,587.5	1.0	7개소
공영차고지	9,998.7	0.4	1개소
도로	459,778.2	20.5	

주) 1. 공원은 공원내 시설로 중복 지정된 저류시설 1개소(A = 20,613.0㎡) 포함면적임

○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 주요유치업종

- 유치업종 배치계획

중분류	업종명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1,371,834.3	100.0%	
16 3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132,655.5	9.7%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8,047.9	5.0%	
24	1차 금속 제조업	48,312.4	3.5%	
25 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¹⁾	23,146.9	1.7%	
26 27 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공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130,891.8	9.5%	
29 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²⁾	599,320.3	43.7%	
10	식료품 제조업 ³⁾	29,476.3	2.1%	
-	임대공장용지 ⁴⁾	17,205.6	1.3%	
-	복합업종 ⁵⁾	296,335.7	21.6%	
-	지식산업센터 ⁶⁾	26,441.9	1.9%	

주)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청정표면처리센터 (23,146.9㎡) 포함

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중 (25922)도금업 제외

3. 식료품제조업 중 (1012)육류가공·저장처리업, (1021)수산식품 가공·저장처리업, (1071)떡·빵·과자류 제조업,

(1073)면류, 마카로니·유사식품제조업, (1079)기타 식료품제조업'에 한함

4. 제시된 9개 업종에 한해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체에 임대

5.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비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91)아스콘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제외),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6. 제시된 9개 업종과 (10)식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3)섬유제품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4. 사업시행지역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 면 적: 2,250,719.2m²

5.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시행방법: 수용방식
- 시행기간: 2021년 7~9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면 적 (㎡)	구성비 (%)	
총 계	2,250,719.2	100.0	-	2,250,719.2	100.0	
주 거 지 역	20,991.3	0.9	-	20,991.3	0.9	
제1종일반주거지역	20,991.3	0.9	-	20,991.3	0.9	
공 업 지 역	2,229,727.9	99.1	-	2,229,727.9	99.1	
일 반 공 업 지 역	2,126,418.1	94.5	-	2,126,418.1	94.5	
준 공 업 지 역	103,309.8	4.6	-	103,309.8	4.6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도면포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	비고
㉔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 - 243일원	2,250,719.2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가) 도로(변경 없음)

① 도로시설 총괄표

(단위 : 개, m, m²)

구 분		폭원 (m)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 적 (m ²)	비고
합 계			65	22,581	459,778.2	
일 반 도 로	광로	소계	-	1	1,590	63,600.0
		1류	-	-	-	-
		2류	-	-	-	-
		3류	40	1	1,590	63,600.0
	대로	소계	-	6	5,145	128,625.0
		1류	-	-	-	-
		2류	-	-	-	-
		3류	25	6	5,145	128,625.0
	중로	소계	-	48	14,848	241,309.0
		1류	20~22	9	3,448	74,772.0
		2류	15	30	9,637	144,855.0
		3류	12	9	1,763	21,682.0
	소로	소계	-	10	998	8,531.0
		1류	10	4	507	5,051.0
		2류	8	1	201	1,608.0
		3류	6	1	14	84.0
특수도로	3류	6~8	4	276	1,788.0	보행자도로
기 타					17,713.2	가감속차로 등

②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광로	3	23	40	주간선도로	10,610 (1,590)	동측행정구역계	대로 2-61	일반도로		인고-118 (98.6.12)	
기정	대로	3	58	25	주간선도로	8,427 (969)	동측행정구역계	지구계 (오류동 1643-10)	일반도로		인고-122 (06.7.24)	
기정	대로	3	114	25	보조간선도로	2,762 (542)	지구계 (오류동 1610-10)	서측행정구역계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대로	3	115	25	보조간선도로	1,320	광로 3-23	대로 3-114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대로	3	116	25	보조간선도로	498	광로3-23	대로3-58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대로	3	117	25	보조간선도로	1,319	광로 3-23	대로 3-114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대로	3	118	25	보조간선도로	497	광로 3-23	대로 3-58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1	140	20	집산도로	675 (298)	광로 3-23	대로 3-59 (오류동 1695)	일반도로		인고-182 (00.10.14)	
기정	중로	1	362	22	집산도로	369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1	363	22	집산도로	1,477	대로 3-117	지구계 (대로 3-64)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1	364	20	집산도로	244	광로 3-23	중로 1-363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1	365	22	집산도로	371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1	366	22	집산도로	117	대로 3-115	지구계 (오류동 1623-9)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1	367	22	집산도로	117	대로 3-115	지구계 (오류동 1623-9)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1	368	22	집산도로	291	광로 3-23	중로 1-363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1	369	22	집산도로	164	중로 1-363	중로 2-655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55	15	집산도로	993	중로 1-363	지구계 (오류동1636-2)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656	15	집산도로	155	중로 1-363	중로 2-655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57	15	집산도로	292	중로 1-363	중로 1-368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58	15	집산도로	266	중로 1-363	중로 2-661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59	15	집산도로	376	중로 1-363	중로 2-661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61	15	집산도로	468	중로 1-368	중로 1-364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62	15~ 21	집산도로	222	광로 3-23	중로 1-140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63	15	집산도로	490	대로 3-58	중로 1-140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64	15	집산도로	329	대로 3-118	중로 2-663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65	15	집산도로	397	대로 3-118	중로 2-663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66	15	집산도로	315	대로 3-117	중로 1-364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67	15	집산도로	243	대로 3-118	중로 2-735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68	15	집산도로	367	대로 3-118	대로 3-116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69	15	집산도로	369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70	15	집산도로	370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71	15	집산도로	284	대로 3-117	중로 2-672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72	15	집산도로	372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73	15	집산도로	373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74	15	집산도로	106	대로 3-58	유수지 ^㉔ (오류동1644-5)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675	15	집산도로	452	중로 1-369	중로 2-655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2	735	15	집산도로	395	대로 3-58	중로 2-668	일반도로		인고-35 (10.02.08)	
기정	중로	2	736	15	집산도로	322	대로 3-58	대로 3-58	일반도로		인고-35 (10.02.0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737	15	집산도로	201	대로 3-58	중로 2-664	일반도로		인고-35 (10.02.08)	
기정	중로	3	249	12	집산도로	383	중로 2-665	중로 2-665	일반도로		인고-35 (10.02.08)	
기정	중로	3	250	12	집산도로	158	중로 1-363	중로 2-659	일반도로		인고-35 (10.02.08)	
기정	중로	3	251	12	집산도로	158	중로 1-363	중로 2-659	일반도로		인고-35 (10.02.08)	
기정	중로	3	392	12	국지도로	40	중로 2-662	중로 3-393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3	393	12	국지도로	376	중로 1-140	지구계 (오류동 1665-2)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3	394	12-16	국지도로	40	중로 1-140	지구계 (오류동 395-93)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중로	3	가	12	국지도로	118	대로 3-114	폐기물처리시설	일반도로		인고-33 (13.02.28)	
기정	중로	3	나	12-15	국지도로	226	중로 2-666	중로 2-666	일반도로		인고-33 (13.02.28)	
기정	중로	3	다	12	국지도로	264	중로 1-363	중로 2-656	일반도로		인고-33 (13.02.28)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79	중로 2-663	소로 1-2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237	중로 3-394	소로 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60	소로 1-2	소로 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01	소로 1-1	지구계 (오류동369-5)	일반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소로	1	가	10	국지도로	31	중로 1-140	중로 2-마	일반도로		인고-33 (13.02.28)	
기정	소로	3	가	6	국지도로	14	지구계 (오류동1143)	지구계 (오류동1143)	일반도로		인고-33 (13.02.28)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9	중로 1-140	소로 1-2	보행자전 용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78	중로 1-363	중로 2-675	보행자전 용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80	중로 2-655	중로 2-675	보행자전 용도로		인고-366 (08.12.29)	
기정	소로	3	나	6-8	특수도로	89	광로 3-23	중로 2-666	보행자전 용도로		인고-33 (13.02.28)	

※ ()는 산업단지내 연장 및 기·종점

나)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합 계		23,587.5		
기정	㉑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40-1	3,765.3	인고-366 (08.12.29)	준공업지역
기정	㉒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58-9	3,883.5	인고-366 (08.12.29)	준공업지역
기정	㉓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9-12	1,650.2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㉔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9-12	1,650.2	서구고시-63 (17.6.5)	일반공업지역
기정	㉕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63-1	3,023.8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㉖	주차장	서구 오류동 1515-5	2,097.4	인고-366 (08.12.29)	준공업지역
기정	㉗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44-9	2,694.2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㉘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0-9	4,822.9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다)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㉑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서구 오류동 1620-1	9,998.7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라) 녹지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합 계		-	193,532.4 (138,754.4)		
기정	㉑	㉑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44-11	11,675.7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㉒	㉒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55-8	18,573.1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㉓	㉓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59-14 일원	5,634.6	인고-366 (08.12.29)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정	㉔	㉔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64	4,393.9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㉕	㉕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36-3	2,858.6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㉖	㉖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66 일원	52,095.9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㉗	㉗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10-8 일원	16,959.2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㉘	㉘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63-9 일원	2,061.1	인고-147 (11.06.20)	일반공업지역
기정	㉙	㉙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44-10 일원	4,738.5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㉚	당하1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63-7 일원	25,800.5 (7,132.5)	서구고시-22호 (05.04.12)	일반공업지역
기정	㉛	당하2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39-13 일원	48,741.3 (12,631.3)	서구고시-22호 (05.04.12)	일반공업지역

※ ()는 산업단지내 위치 및 면적

마) 공원(변경 없음)

■ 총괄표 (산업단지 내)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정		기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3	66,852.2	3	66,852.2
도시자연공원	-	-	-	-
근 린 공 원	3	66,852.2	3	66,852.2
어린이공원	-	-	-	-
소 공 원	-	-	-	-
묘 지 공 원	-	-	-	-
체 육 공 원	-	-	-	-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합 계			-	66,852.2		
기정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1656-4	10,970.2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1665-2	10,869.3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1613-1 일원	45,012.7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바)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없음)

■ 단위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변전소	서구 오류동 1636-1	3,993.1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사) 우수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합 계	-	-	-	41,277.2	-	-
기정	㉑	우수지	저류시설	서구 오류동 1644-5	13,269.4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㉒	우수지	저류시설	서구 오류동 1636-2	7,280.1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㉓	우수지	저류시설	서구 오류동 1611-4	20,613.0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공원)과 중복결정
기정	㉔	우수지	저류시설	서구 오류동 1611-20	114.7	-	일반공업지역

아) 방수설비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㉑	방수설비 (빗물펌프장)	서구 오류동 1665-1	4,139.6	인고-147 (11.06.20)	일반공업지역

자)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㉑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610-3	38,680.9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차)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㉑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610-4	40,088.4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가) 공장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공장용지 (I)	I 1	13,044.7	-	-	· 최소획지: 1,650㎡
	I 2	63,725.0	-	-	
	I 3	40,506.1	-	-	
	I 4	37,562.9	-	-	
	I 5	7,950.8	-	-	
	I 6	17,421.4	-	-	
	I 7	21,347.6	-	-	
	I 8	69,255.4	-	-	
	I 9	47,416.5	-	-	
	I 10	69,649.6	-	-	
	I 11	36,203.9	-	-	
	I 12	73,111.5	-	-	
	I 13	28,939.4	-	-	
	I 14	28,528.8	-	-	
	I 15	43,343.3	-	-	
	I 16	40,820.7	-	-	
	I 17	43,038.1	-	-	
	I 18	8,275.6	-	-	
	I 19	20,770.7	-	-	
	I 20	46,854.2	-	-	
	I 21	26,441.9	-	-	· 지식산업센터용지

< 표계속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공장용지 (1)	I 22	58,701.6	-	-	· 최소획지 : 1,650㎡
	I 23	19,230.1	-	-	
	I 24	13,653.4	-	-	
	I 45	16,732.9	-	-	
	I 25	35,656.4	-	-	
	I 26	31,269.3	-	-	
	I 27	8,323.9	-	-	
	I 46	24,150.3	-	-	
	I 28	18,080.8	-	-	
	I 29	17,440.3	-	-	
	I 30	17,205.6	-	-	· 임대부지 · 최소획지:1,650㎡
	I 31	16,586.5	-	-	· 최소획지 : 1,650㎡
	I 37	11,335.9	-	-	
	I 38	18,140.4	-	-	
	I 39	6,641.2	-	-	
	I 32	29,649.1	-	-	
	I 33	11,435.2	-	-	
	I 47	21,902.1	-	-	
	I 34	31,078.1	-	-	
	I 35	42,749.2	-	-	
	I 36	15,806.7	-	-	
	I 40	3,876.3	-	-	
	I 41	10,957.0	-	-	
I 42	21,769.6	-	-		
I 43	28,754.6	-	-		
I 44	7,806.3	-	-		
I 48	23,146.9	-	-	· 지식산업센터용지	
I 49	25,546.5	-	-	· 최소획지:1,650㎡	
합 계		1,371,834.3	-	-	

나)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단독주택 (H)	H 1	1,799.3	①	254.5	· 합병불가 · 분할불가		
			②	241.5			
			③	243.9			
			④	244.1			
			⑤	244.4			
			⑥	243.0			
			⑦	327.9			
	H 2	2,518.2	①	259.8			
			②	247.5			
			③	248.6			
			④	247.7			
			⑤	255.8			
			⑥	261.6			
			⑦	247.3			
			⑧	247.3			
			⑨	247.4			
			⑩	255.2			
	H 3	1,376.1	①	281.8			
			②	273.9			
			③	273.8			
			④	273.7			
			⑤	272.9			
	합 계		5,693.6			5,693.6	

다) 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지원시설용지 (S)	S 2	18,408.6	①	2,028.7	· 공동개발 권장, 합병은 인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 · 분할불가(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전의 획지 선으로 재분할 가능)
			②	2,608.1	
			③	674.0	
			④	677.0	
			⑤	627.9	
			⑥	595.8	
			⑦	642.1	
			⑧	660.8	
			⑨	660.0	
			⑩	650.9	
			⑪	596.0	
			⑫	613.5	
			⑬	672.3	
			⑭	2,050.1	
			⑮	984.6	
			⑯	978.2	
			⑰	945.0	
			⑱	1,743.6	
	S 2a	4,527.3	①	706.7	
			②	520.1	
			③	519.5	
			④	512.5	
			⑤	697.4	
			⑥	520.9	
			⑦	521.7	
			⑧	528.5	
	S 2b	4,662.5	①	526.9	
			②	520.1	
			③	519.4	
			④	800.6	
			⑤	514.0	
			⑥	521.1	
			⑦	521.8	
			⑧	738.6	

< 표계속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지원시설용지 (S)	S 3	7,919.6	①	3,959.2	· 공동개발 권장, 합병은 인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 · 분할불가(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전의 획지 선으로 재분할 가능)
			②	3,960.4	
	S 3a	8,580.8	①	885.7	
			②	819.7	
			③	823.1	
			④	818.2	
			⑤	1,456.2	
			⑥	1,472.7	
			⑦	1,012.6	
			⑧	627.5	
			⑨	665.1	
	S 3b	5,606.0	①	565.1	
			②	560.1	
			③	560.1	
			④	560.0	
			⑤	564.9	
			⑥	557.8	
			⑦	560.0	
			⑧	560.2	
			⑨	559.9	
			⑩	557.9	
	S 5	2,868.6	①	1,434.8	
			②	1,433.8	
합 계		52,573.4		52,573.4	

라) 재활용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재활용시설 (RE)	RE	9,620.7	①	9,620.7	
합 계		9,620.7	-	9,620.7	

마)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주유소(O)	O 1	2,441.5	①	2,441.5	
합 계		2,441.5	-	2,441.5	

바) 주차장(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주차장(P)	P 1	3,765.3	①	3,765.3	
	P 2	3,883.5	①	3,883.5	
	P 3	1,650.2	①	1,650.2	
	P 8	1,650.2	②	1,650.2	
	P 4	3,023.8	①	3,023.8	
	P 5	2,097.4	①	2,097.4	
	P 6	2,694.2	①	2,694.2	
	P 7	4,822.9	①	4,822.9	
합 계		23,587.5	-	23,587.5	

사) 공영차고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공영차고지 (PP)	PP	9,998.7	①	9,998.7	
합 계		9,998.7	-	9,998.7	

아) 유수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유수지 (WR)	WR 1	13,269.4	①	13,269.4	
	WR 2	7,280.1	①	7,280.1	
	WR 3	20,613.0	①	20,613.0	
	WR 4	114.7	①	114.7	
합 계		41,277.2	-	41,277.2	

주) ㉞호 유수지(WR3)은 ㉞호 공원내 시설과 연계설치(A = 20,613.0㎡)

자) 변전소(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변전소 (TS)	TS	3,993.1	①	3,993.1	
합 계		3,993.1	-	3,993.1	

차) 방수설비(빗물펌프장)(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방수설비 (RP)	RP	4,139.6	①	4,139.6	
합 계		4,139.6	-	4,139.6	

카) 폐기물처리시설(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폐기물처리시설 (W)	W	38,680.9	①	38,680.9	
합 계		38,680.9	-	38,680.9	

타) 폐수종말처리장(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폐수종말처리시설 (WDP)	WDP	40,088.4	①	40,088.4	
합 계		40,088.4	-	40,088.4	

파) 공공문화·복지시설(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공공문화·복지시설 (CW)	CW1	2,018.5	①	2,018.5	
합 계		2,018.5		2,018.5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공장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장 용지 (I)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I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I9</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I1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I3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I33</div> </div>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 용지 (I)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7</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2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26</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28</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3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34</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36</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4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46</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47</div> </div>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383)을 영 위하기 위한 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 용지 (I)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I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I4</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I29</div>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륜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 용지 (I)	I3 I44	용 도	허용 용도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 용지 (I)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6</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8</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1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1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13</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14</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16</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17</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2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2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24</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27</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3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4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4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49</div> </div>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륜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장 용지 (I)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1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18</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19</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23</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39</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4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43</div> </div>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 용지 (I)	I37 I38	용 도	허용 용도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륜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 용지 (I)	I 48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의 시설을 말함 2.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25)에 한한다. 3. 기타사항은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을 따른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지식산업센터 내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동물병원,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용도는 불허)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용: 시설면적 190㎡당 1대, 기타용 : 관련조례 준수 • 기계식 주차장 불허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 용지 (I)	I 21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의 시설을 말함 2.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25)에 한한다. 3. 기타사항은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을 따른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지식산업센터 내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동물병원,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용도는 불허)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용: 시설면적 190㎡당 1대, 기타용 : 관련조례 준수 • 기계식 주차장 불허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 용지 ①	I30	용 도	허용 용도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 축 선	-				

2)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 독 주 택 용 지 (H)	H1 ~ H3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포함) • 1층에 한하여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 가목 및 나목에 한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이(층)	3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부: 건축설비 노출 금지 • 담장: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주 차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단독주택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단독주택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단독주택용지의 강조색(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1-1, 소로1-2, 소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 1m 				

3)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 원 시 설 용 지 (S)	S2 - ①~⑱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	7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서터: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 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3-23, 대로 3-118, 중로1-140, 중로2-663, 중로2-665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중로3-249호선변 건축한계선 2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 원 시 설 용 지 (S)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S2a</div> - ①~⑧,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S2b</div> - ①~⑧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	7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서터: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중로2-665, 중로3-249호선변 건축한계선 3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 원 시 설 용 지 (S)	S3 - ①, ②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	7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광로3-23, 중로2-666호선변 건축한계선 3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 원 시 설 용 지 (S)	S3a - ①~⑨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	7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3-23, 중로1-364, 중로2-666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중로3-나호선변 건축한계선 2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 원 시 설 용 지 (S)	S3b - ①~⑩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	7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중로2-666호선, 중로3-나호선변 건축한계선 3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 원 시 설 용 지 (S)	S5 ①, ②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	7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대로3-117, 중로2-671, 중로2-672호선변 건축한계선 5m		

4) 재활용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재활용 시설 용지 (RE)	RE ①	용 도	허용 용도	• 재활용산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층)	-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5)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소 용 지 (S)	O 1 - ①	용 도	허용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부대시설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부대시설 포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	5층이하	
		배 치	• 각 시설별 관계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	
		색 채	• 정유업체 고유 색채 적용 가능 • 정유업체 고유 색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색채기준 준수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광로3-23, 중로1-364호선변 5m			

6) 주차장(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장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P1</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P8</div> ①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비율은 연면적의 30%이내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운동시설(운동장,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900%이하	
		높이(층)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 지상부에 일부 주차장 설치 주차구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할 것 단, 불가피한 경우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가능	

7) 공영차고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 영 차고지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PP</div> - ①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련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층)	-	

8) 공공문화·복지시설(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공 문화 · 복지 시설 (CW)	CW1 - ①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수행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관 -제13호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	-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	5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설별 관계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옥상녹화 및 옥상휴게공간 설치 권장 · 장애인을 위한 계획 -사회복지시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색 채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3-23호선, 대로3-118호선변 3m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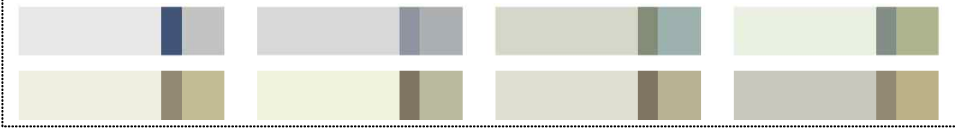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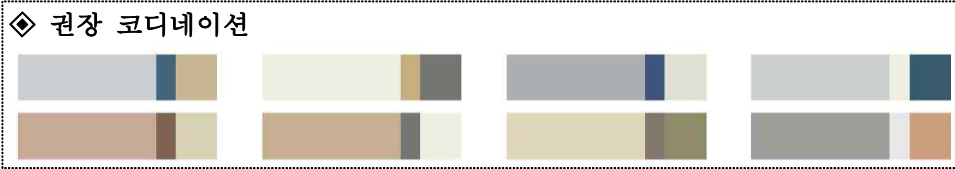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공 문화 · 복지 시설 (CW)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CW 1</div> - ①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수행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	-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	5층이하		
		배 치	• 각 시설별 관계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옥상녹화 및 옥상휴게공간 설치 권장 • 장애인을 위한 계획 -사회복지시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색 채	주조색	• 『붙임#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붙임#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붙임#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광로3-23호선, 대로3-118호선변 3m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1)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검단 일반산업 단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름 •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할 것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에 관한 기준 제시(권장) - “첨부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참조 	
경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건축물에 의한 대형입면은 시각적 분절 등의 방법으로 위압감을 감소시키고 미관을 향상시킬 것 •차가운 이미지의 공장시설은 가급적 녹지를 통하여 차폐 	권장 사항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함 (관련법이 변경 시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붙임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2010)

구 분	색채 사용범위*
공장용지 (공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5~9.5 / 채도4 이하 • 보조: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4~9 / 채도5 이하 • 강조: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4~7 / 채도5 이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권장 코디네이션</p>  </div>
지원시설용지 (준공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5~9.5 / 채도4 이하 • 보조: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4~9 / 채도6 이하 • 강조: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4~7 / 채도6 이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권장 코디네이션</p>  </div>
단독주택용지 (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RP, R, YR, Y / 명도4 이하 / 채도3 이하 • 주조: 재료 고유색 권장.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4 이상 / 채도4 이하 • 보조: 재료 고유색 권장.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4 이상 / 채도4 이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권장 코디네이션</p>  </div>

※ 색채 사용범위는 Munsell표기임

붙임 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구 분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지원시설용지	공장용지
수 량	• 1개 업체당 2개 이하(단 각각부에 한하여 3개 이하로 허용)		
가로형 간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입체형(권장) • 위치: 1층 이하로 제한 • 가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세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90% 이내로 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입체형(권장) • 위치: 5층 이하로 제한 • 가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세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90% 이내로 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입체형(권장) • 위치: 5층 이하로 제한 • 가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세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음
돌 출 간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2층이하 • 가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벽면에서 0.8m 이하 • 세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를 초과할 수 없음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0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3층 이하 • 가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벽면에서 0.9m이하 • 세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를 초과할 수 없음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0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5층 이하 • 가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벽면에서 1.0m이하 • 세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m를 초과할 수 없음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5m 이상
지주이용 간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이용간판 설치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주출입구 • 가로크기: 1.0m이하 • 세로크기: 5.0m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주출입구 • 가로크기: 1.0m이하 • 세로크기: 5.0m이하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2개)내에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 • 창문을 이용한 광고문안 및 업체명 설치와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설치를 금지 (단, 지원시설용지는 옥상간판을 허용) • 간판의 위치에 관하여 1층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층으로 적용 • 건물보호 및 무질서한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간판부착 위치를 첨부토록 함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준용함 		

7.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다음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관련 도서: 『별첨』 (계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과 (전화 032-560-5772)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84호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1-10번지 등 7필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607,143.1	-	607,143.1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1) 단독주택용지(A-1용도)(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A-1	38	5,484.7	7	375.4		A-1	38	5,484.7	7	515.2	
			8	657.2					8	517.4	

(2) 공동주택용지(B-5용도)(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B-5	55	5,579.4	1	257.0		B-5	55	5,579.4	1	507.0	
			2	250.0					7	1,919.6	
			7	633.7							
			8	617.9							
			9	668.0							

■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7 면적: 375.4㎡ → 515.2㎡ · 38-8 면적: 657.2㎡ → 517.4㎡ ○ 획지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B-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1, -2 → 55-1 · 55-7, -8, -9 → 5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다)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59번길 8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11.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1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3-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59번길 8 (청라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9-9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4번길 6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69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22-1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99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20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691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22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0-12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77번길 26-1 (가좌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5-6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188번길 46 (마전동)	20081231	원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마전게이트블장
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39 (원당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다섯번째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6-15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16-55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3-19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16-52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3-18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16-54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18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1번길 4-16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4-13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4번길 17-13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6-4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3-5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32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27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26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16번길 6 (청라동)	20180827	청서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0M 오른쪽으로 분기된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11-8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487번길 11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19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1-69호선) 실시계획(변경) 열람 · 공고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19호(2021.06.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1-69호선, 사업명: 가좌동 염곡로(1-69호선) 확장공사】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73번지~585-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69호선)
- 명칭 : 가좌동 염곡로(1-69호선)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기정	도로	중로	1	69	20	20	2,066	-	358	-	5,193
변경	도로	중로	1	69	20	20	2,066	-	358	-	6,986.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2021. 11. 8. ~ 11. 22.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가좌동 염곡로(1-69호선) 확장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당초	가좌동	염곡로	178-166	도	1,943	39	국 (국토교통부)				
	변경	가좌동	염곡로	178-166	도	1,943	11	국 (국토교통부)				
2	당초	가좌동	염곡로	178-363	도	16	8	헨**	인천 서구 가좌동 **			
	변경	가좌동	염곡로	178-363	도	16	16	헨**	인천 서구 가좌동 **			
3	당초	가좌동	염곡로	178-10	장	11,925	2	헨**	인천 서구 가좌동 **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38(여의도동)(인천지점)	근저당권
	변경	가좌동	염곡로	178-10	장	11,925	-	헨**	인천 서구 가좌동 **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38(여의도동)(인천지점)	근저당권
4	당초	가좌동	염곡로	589-1	도	48,163	130	인천광역시				
	변경	가좌동	염곡로	589-1	도	48,163	-	인천광역시				
5	당초	가좌동	염곡로	588	도	2,537	2,484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가좌동	염곡로	588	도	2,536.9	2,536.9	인천광역시 서구				
6	당초	가좌동	염곡로	178-310	도	5,264	107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가좌동	염곡로	178-310	도	5,264	-	인천광역시 서구				
7	당초	가좌동	염곡로	585-74	도	2,776	769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가좌동	염곡로	585-74	도	2,776	2,776	인천광역시 서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당초	가좌동	염곡로	585-1	장	13,680	914	토**	인천광역시 남구 방죽로 ***(도화동)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부천지점)	근저당권	
	변경	가좌동	염곡로	585-1	장	13,679.8	914	주식회사 정***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4*~3*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인천북항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백***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인천북항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길2*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인천북항지점)	근저당권	
9	당초	가좌동	염곡로	178-297	장	496	8	유**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동**호) (산곡동,금**)	린나이 코리아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60-2	근저당권	
	변경	가좌동	염곡로	178-297	장	496	-	유**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동**호) (산곡동,금**)	린나이 코리아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60-2	근저당권	
10	당초	가좌동	염곡로	585-80	장	299	299	임**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동**호) (마전동,우**)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둔산동)	근저당권	
	변경	가좌동	염곡로	585-80	장	299.3	299.3	임**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동**호) (마전동,우**)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둔산동)	근저당권	
11	당초	가좌동	염곡로	585-81	장	433	433	임**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번길***(동**호) (마전동,우**)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120 (목동해누리지점)	근저당권	
	변경	가좌동	염곡로	585-81	장	433.2	433.2	임**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번길***(동**호) (마전동,우**)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120 (목동해누리지점)	근저당권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가좌동 염곡로(1-69호선) 확장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가좌동	염곡로	178-363 도	간판		1EA		C**	인천 서구 가좌동 **_**			
2	가좌동	염곡로	178-363 도	담장	메쉬웬스 및 블럭담	8.3m		헨**	인천 서구 가좌동 **_**			
3	가좌동	염곡로	588도	담장	블럭담	87.4m						
4	가좌동	염곡로	585-74 도	웬스	철조망웬스	19.65m		린**	인천 서구 가좌동 **_**			
5	가좌동	염곡로	585-74 도	수목		3주						
6	가좌동	염곡로	585-1 장	건물	컨테이너박스	16.98㎡						
7	가좌동	염곡로	585-1 장	웬스	철조망웬스	11.25m						
8	가좌동	염곡로	585-1 장	옹벽		7.21m						
9	가좌동	염곡로	585-1 장	웬스	철조망웬스	19.79m						
10	가좌동	염곡로	585-1 장	간판		1EA						
				대문	접철식 대문(H=2.5)	9㎡						
				대문	접철식 대문(H=2.5)	2㎡						
11	가좌동	염곡로	585-1 장	옹벽		21.46m						
				대문	접철식 대문(H=2.5)	2㎡						
				대문	접철식 대문(h=2.5)	2㎡						
12	가좌동	염곡로	585-1 장	교목		24주						
13	가좌동	염곡로	585-1 장	옹벽		28.77m						
14	가좌동	염곡로	585-1 장	웬스	철조망웬스	40.34m						
15	가좌동	염곡로	585-80 장	간판		1EA		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_**			
				대문	접철식 대문(H=1.3)	1㎡						
				대문	접철식 대문(h=1.3)	2㎡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 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6	가좌동	염곡로	585-80 장	웬스	철조망웬스	14.78m		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_**			
17	가좌동	염곡로	585-81 장	옹벽		14.99m						
18	가좌동	염곡로	585-81 장	담장	블럭담	39.02m						
19	가좌동	염곡로	585-81 장	교목		24주						
20	가좌동	염곡로	585-81 장	웬스		27.67m						
21	가좌동	염곡로	589-1 도	건물		4.36㎡		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_**도			

■ 위치도

— 가좌동 엽곡로(중로1-69호선) 확장공사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차로 축소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가좌동 린나이 물류센터 일원 염곡로를 확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가좌동 염곡로(1-69호선) 확장공사

4. 규 모 (변 경)

구분	종류	등급 (기능)	노선명	연장(m)	폭원(m)	면적(A)	위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일	비 고
기정	도로	중로 (국지도로)	1-69	358.0 (공사구간)	20	5,193.0 (공사구간)	가좌동 585-73번지~ 가좌동 585-25번지	인고1406 88.11.25	
변경	도로	중로 (국지도로)	1-69	358.0 (공사구간)	20	6,986.4 (공사구간)	가좌동 178-166번지~ 가좌동 585-81번지	인고1406 88.11.25	

5. 사업시행자 주소 및 명칭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나. 명 칭 : 인천광역시 서구청

6.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가. 착 공 : 인가일
나. 준공예정 : 2022. 12.

7. 제 원 조 서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공 사 비	635	폐기물 처리비 포함
보 상 비	3,558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계	4,19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용지조서, 지장물 조서 및 별첨도면 참고”

9. 공사 세부개요

○ 토 공

- 흙깎기(토사):1,620m³, 벌개제근:810m², 사토운반:2,108m³,
노상준비공(절토부):1,558m², 노상준비공(기존도로부):1,085m²

○ 배 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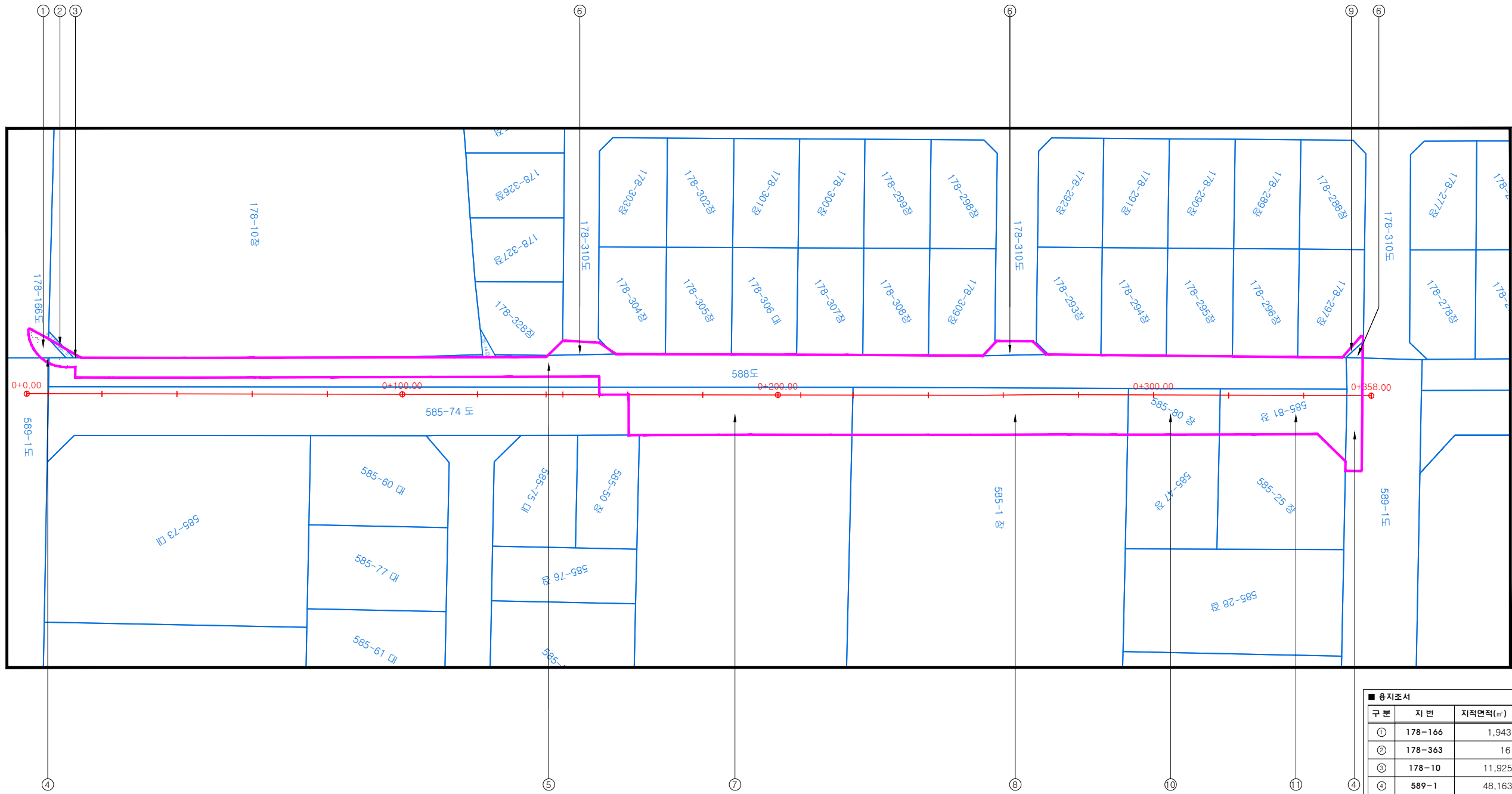
- 종배수관(D1000):141m, 우수맨홀 설치(D1500):2개소, PC우수받이(300X400X900):38개소,
다중벽관(D250):69m, 주철우수받이(504X404X400):2개소, 새들분기관 설치:40개소

○ 포 장 공

- 표층:2,658m², 중간층:2,658m², 기층:3,046m², 보조기층:845m³, 보도포장:1,09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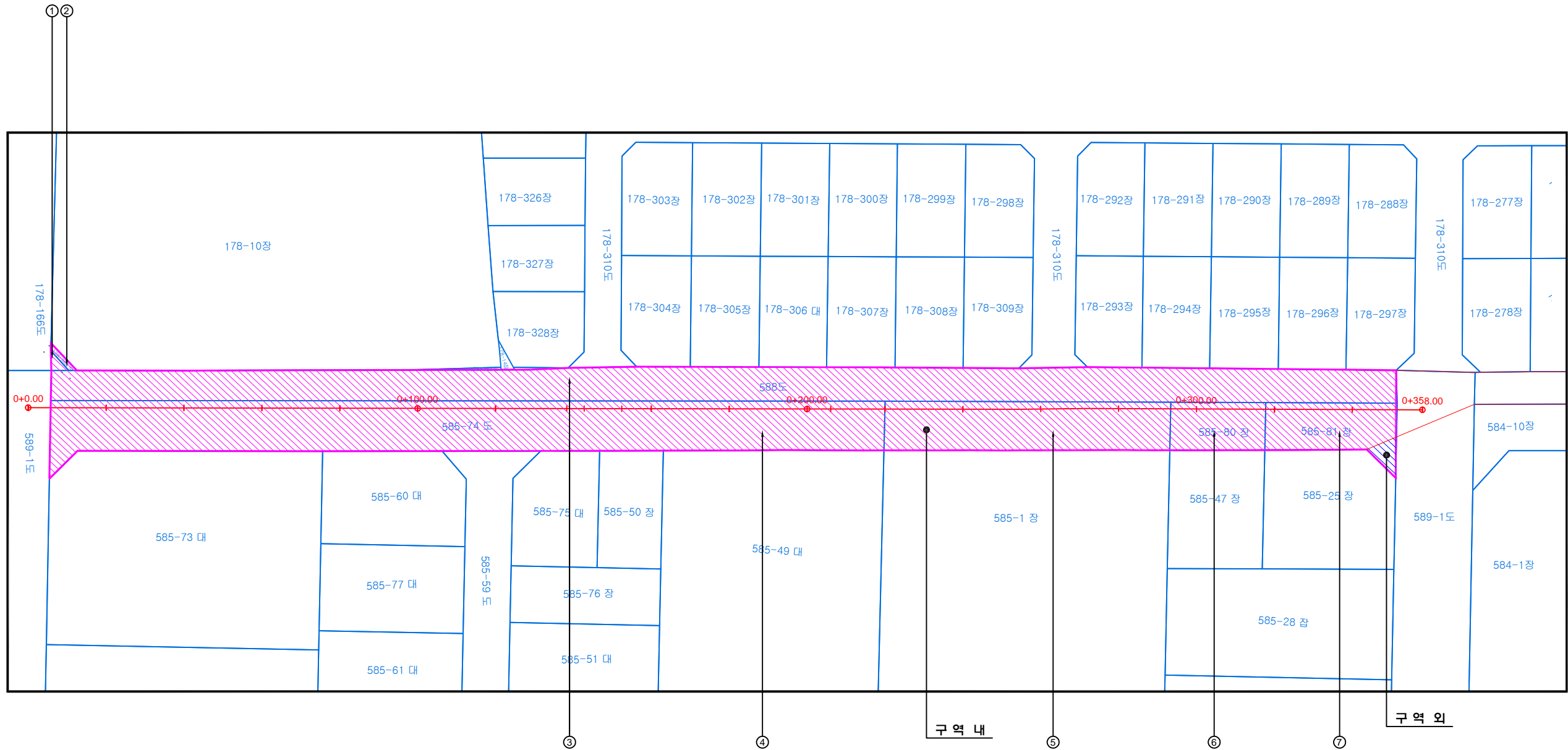
○ 부 대 공

- 1식



구 분	지 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①	178-166	1,943	39	국(국토교통부)
②	178-363	16	8	엔즈코퍼레이션
③	178-10	11,925	2	엔즈코퍼레이션
④	589-1	48,163	130	인천광역시
⑤	588	2,537	2,484	서구
⑥	178-310	5,264	107	서구
⑦	585-74	2,776	769	서구
⑧	585-1	13,680	914	토지산업개발
⑨	178-297	496	8	유준
⑩	585-80	299	299	임석근
⑪	585-81	433	433	임석근
합 계		87,532	5,193	

공 사 명	시 행 청	공 역 회 사	축 척	실 계 일 자	과 임 책 임 자	과 임 참 여 자	설 계 자	도 면 명	도 면 번 호
가좌동 연곡로(1-69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서 구 청	羅高山엔지니어링 KOSAN ENGINEERING CO., LTD.	1:600	2019. 11	김태열	조동섭	김두영	용 지 도	501



구분	지번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비고
			구역 내	구역 외	
○	178-166	1,943.0	11.0	11.0	국(국토교통부)
○	178-363	16.0	16.0	16.0	원즈코퍼레이션
○	588	2,536.9	2,536.9	-	서구
○	585-74	2,776.0	2,776.0	-	서구
○	585-1	13,679.8	914.0	914.0	주식회사경도교육 주식회사백두반도 주식회사대선반도
○	585-80	299.3	299.3	-	임석근
○	585-81	433.2	394.2	39.0	임석근
합계		21,684.2	6,986.4	6,947.4	39.0

공사명	시 행정	용역 회사	축척	설계 일자	도면명	도면번호
가좌동 연곡로(1-69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서구청	고산엔지니어링 KOSAN KOSAN ENGINEERING CO.,LTD.	1:600	2019. 11	용 지도	501
				과업책임자: 김태열 과업참여자: 조동섭 과업참여자: 김두영 분야별책임자: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19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73호선)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1988-1406호(1988.12.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중로1-73호선,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중(집)1-73호선) 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1번지 외 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73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중(집)1-73호선) 개설공사
- ※ 가감속차로 및 완화구간 설치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m ²)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1	73	20	20~23	530	530	-	-	37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대표 배일규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석남동	223-41	창	25,223	246	아시아 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2	석남동	223-897	잡	173	75	인천 광역시					
3	석남동	223-504	잡	116	52	인천 광역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중로	1	73	20~23	집산 도로	530	석남동 223-191 (광2-9)	석남동 233-11 (중1-27)	일반 도로	-	88.12.2.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인천 서구청 본관4층 도시계획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9.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1. 11. 8. ~ 2021. 11. 22. (14일간)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열람장소 직접제출 또는 우편)
 - ※ 우편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도시계획과 (우편번호22726)

1. 위 치 도

위 치 도

SCALE= NONE



2. 사 업 계 획 서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중(집)1-73호선) 개설공사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1번지 외 2필지

3. 목적

- 변화하는 물류환경 및 소비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고자 함

4. 사업실시 규모(시설결정)

구분	명칭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73	20	집산도로	530	석남223-191 (광2-9)	석남233-11 (중1-27)	일반도로	-	88.12.2	일부구간확폭
변경	중로	1	73	20~23	집산도로	530	석남223-191 (광2-9)	석남223-11 (중1-27)	일반도로	-	88.12.2	일부구간확폭

5. 사업자 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 성명 :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대표 배일규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 : 2023. 03.

7. 자금도달 계획

재정확보 방안

- 도시계획시설(도로:중(집)1-73호선) 개설공사를 위해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서 공사비 91,403,203원을 자체자금 및 융자를 통하여 확보

단계별 사업비 투자계획

- 단계별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투자계획 수립

(단위 : 천원)

내역	소요자금						비고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계	91,403	18,280.6	18,280.6	18,280.6	18,280.6	18,280.6	
도로개설	91,403	18,280.6	18,280.6	18,280.6	18,280.6	18,280.6	

8. 공사수량

공 정 별			단위	비고
구 분	규 격	수 량		
1. 토 공				
1) 절토	기계100%(백호0.7m ³)	339	m ³	
2) 터파기(토사)	기계100%(백호0.7m ³)	26	m ³	
3)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100%(백호0.7m ³ + 플레이트 콤팩터-1.5ton)	22	m ³	
4) 되메우기운반(토사)	L = 2.0km	22	m ³	
5) 잔토운반(토사)	L = 30.00km	342	m ³	
6) 무근콘크리트깨기	T = 30cm미만	54.38	m ³	
7) 아스팔트포장깨기	일반구간	8.65	m ³	
8) 폐기물상차	굴삭기 0.7m ³	63.03	m ³	
9)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덤프 24ton	54.38	m ³	
10) 폐콘크리트 처리비		125.07	ton	
11)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덤프 24ton	8.65	m ³	
1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		16.1	ton	
2. 우 수 공				
1) 빗물받이(PC)	0.30x0.90,H0.97m	2	ea	
2) 우수연결관(PVC이중벽관)	D250mm	6	m	
3. 포 장 공				
1) 아스콘포장	T = 650mm	324	m ²	
2) 보도용블럭포장		479	m ²	
3) 보차도경계석 및 L형측구(직선)	화강석, 200*250*1000	94	m	
4) 도로경계석	화강석, 150*150*1000	115	m	
5) 차선도색(용착식도로)-공용구간	백색실선	46.7	m ²	
6) 차선도색(용착식도로)-공용구간	황색실선	95	m ²	
4. 부 대 공				
1) 표지판 이설		1	개	
2) 가로등 이설	5m~7m	3	개	

9. 우수 계획

- ④ 우수계획은 유속 0.8m/sec-3.0m/sec로 유지토록 하였으며, 기존 우수구조물(빗물받이 300X900)정비 ⇒ 기존 우수관로 ⇒ 기존 도시계획도로(중(집)1-73호선)에 매설된 기존 우수BOX(4.0X2.0) 배출계획

10. 재해방지 및 환경오염방지계획

④ 위해방지계획

- 1) 건설시 발생하는 소음은 가설 방음벽 등을 설치함
- 2) 공사 중 발생하는 분진 및 먼지에 대하여 세륜 세차시설 및 정기적 살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함
- 3)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처리
- 4) 공사 현장 내 교통처리 계획으로 각종 사고예방에 주력
- 5) 각종 위해로부터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위해방지대책 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
- 6) 공사시 위해 취약 요인에 대하여 사전 점검정비를 생활화하고, 수방자재, 방재물자, 장비 확보 및 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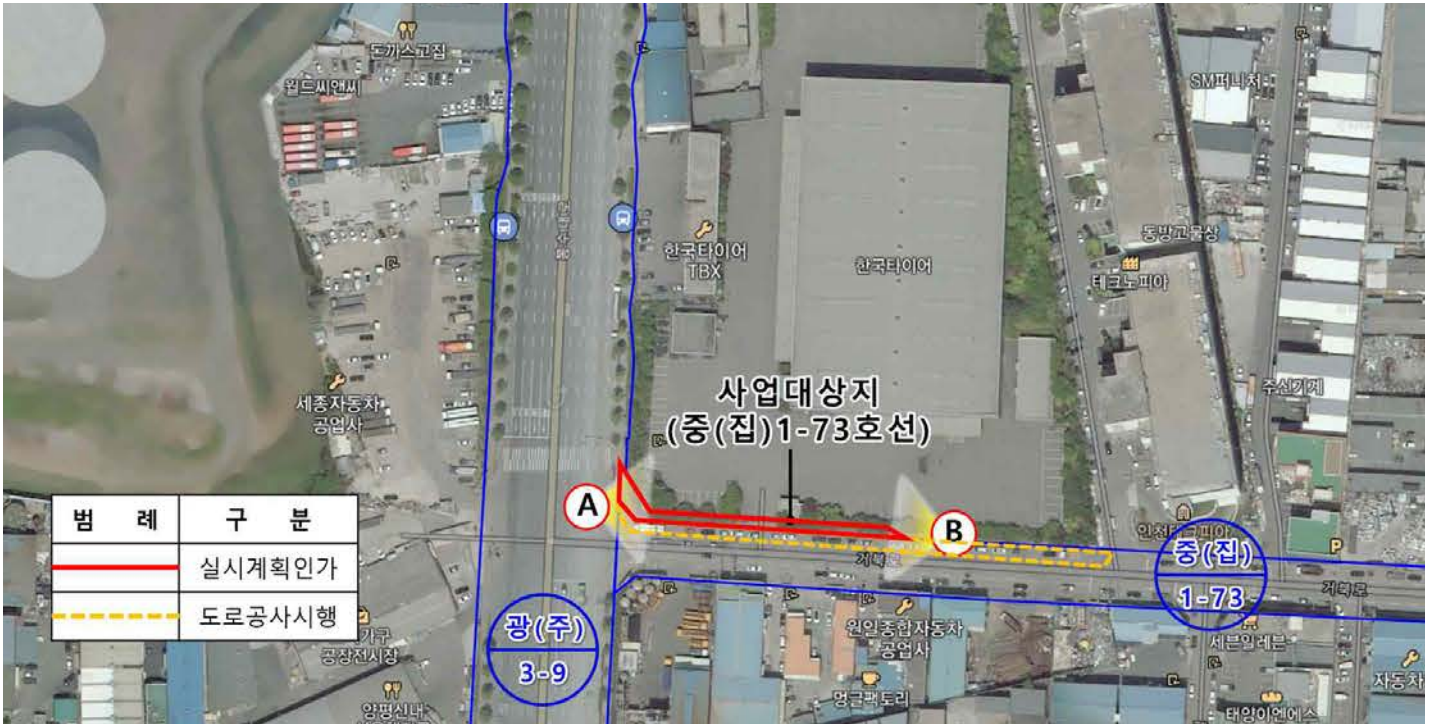
④ 환경오염 방지계획

- 1) 동, 식물상
사업지구 내 보호종 및 동식물 군락지는 없음
- 2) 대기질
토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NOX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장 내 장비운행 속도 제한 (20/hr이하), 토사운반차량에 대한 덮개 설치 및 주기적 살수 등으로 실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3) 수질
본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우수계획으로 빗물받이는300X900로 설계하고, 기존 연결관으로 연결처리토록하여 인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4) 폐기물
발생되는 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전량 수거 처리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5) 소음, 진동
공사는 가급적 주간에만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장 구역내는 차량 소통이 많은 교통 광장 범위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피해를 최소화하며, 각 장비들은 최대한 분산 배치하여 소음, 진동의 발생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기타

- ④ 제반허가사항과 제반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인근 필지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기할 계획임

▶ 도시계획시설(도로:중(집)1-73호선) 개설공사



VIEW "A"



VIEW "B"



○ 도시계획시설(도로:중(집)1-73호선) 개설공사 협의 내용

협의기관	부 서	협 의 내 용	비 고
인천광역시	도로과	○ 가감속차로 및 완화구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 구 청	재무과	○ 국·공유지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과	○ 하수시설 이전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도로과	○ 국·공유지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보도,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 이전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가감속차로 및 완화구간 설치 및 기부채납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부서	○ 실시계획(안) 관련 의견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 한전주 이전설치 등에 관한 사항	
KT서인천지사		○ 통신주 이전설치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1958호

등록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서구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인 등록 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공인 등록
2. 공인 등록일 : 2021년 11월 8일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참조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cm)	등록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석남2동통합민원전용2(인증기 종형)	기관장인	2.4 x 2.4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석남2동통합민원전용2(인증기 횡형)	기관장인	2.4 x 2.4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3	석남2동장인/통합민원전용2(인증기 종형)	기관장인	2.1 x 2.1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4	석남2동장인/통합민원전용2(인증기 횡형)	기관장인	2.1 x 2.1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5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마전동통합민원전용3(인증기 종형)	기관장인	2.4 x 2.4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6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마전동통합민원전용3(인증기 횡형)	기관장인	2.4 x 2.4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7	마전동장인/통합민원전용3(인증기 종형)	기관장인	2.1 x 2.1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8	마전동장인/통합민원전용3(인증기 횡형)	기관장인	2.1 x 2.1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석남2동통합민원전용2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석남2동통합민원전용2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1년 11월 8일	
석남2동장인/ 통합민원전용2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1년 11월 8일	
석남2동장인/ 통합민원전용2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마전동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마전동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1년 11월 8일	
마전동장인/ 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1년 11월 8일	
마전동장인/ 통합민원전용3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1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2021-9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1. 11. 8.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검단오류역우방아이유셀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대촌로 26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42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1년 11월 7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2년 2월 7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